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

제정 2011. 8. 5.

개정 2012. 4. 23.

개정 2013. 9. 1.

개정 2014.11. 4.

개정 2016.12. 29.

- 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한국인터넷진흥원(이하 "진흥원"이라 한다) 임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진흥원 임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에 관하여 법령과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.
- 제3조(고발대상) 고발대상은 진흥원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자 및 직무와 관련된 민간 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.
- 제4조(고발주체 및 의무) ①진흥원 임직원 및 감사담당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 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감사실장을 통하여 이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4. 23>
 - ②원장 또는 감사실장은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 또는 보고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의 규정 및 이 지침에 의하여 이를 고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4. 23>
- 제5조(고발기준 및 결정)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여부 및 경 중을 고려하여 판단하되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.
 - 1. 뇌물수수·공금횡령·배임 등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. 단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.
 - 가. <삭제 2016.12.29>
 - 나. 100만원(누계금액) 이상의 금품향응수수・공금횡유용을 한 경우 <개정 2016.12.29>
 - 다. 100만원(누계금액) 미만의 공금횡유용 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<개정 2016.12.29>
 - 라. <삭제 2016.12.29>

- 마. 최근 3년 이내에 금품향응수수·공금횡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같은 비위를 한 경우 <개정 2016.12.29>
- 바. 채용·근무평정·계약·협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하는 등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경우<개정 2016.12.29>
- 사. 100만 원 미만이라도 비위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<신설 2016.12.29>
- 2. <삭제 2016.12.29>
- 3.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사실이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<개정 2016.12.29>
- 4. <삭제 2016.12.29>
- 5. <삭제 2016.12.29>
- 6. <삭제 2016.12.29>
- 7. 기타 범죄의 횟수,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제6조(고발시기 및 절차) ①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. '사실을 확인한 즉시'라 함은 횡령혐의자가 횡령사실 및 횡령금액 등에 대하여 시인한 경우를 말한다.
 - ②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횡령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발한다.
 - ③고발은 원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,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.
- 제7조(고발처리상황의 관리) ①감사실장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<개정 2012. 4. 23> ②제5조에서 정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 하는 사유를 원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.
- 제8조(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) 원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 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인사규정 제36조 제2호에 따라 그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타 지침의 폐지) 공금횡령범죄 고발지침은 폐지한다.

부 칙<2012. 4. 23>

제1조 (시행일) 이 지침은 경영기획실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3. 9. 1>

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4. 11. 4>

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6. 12. 29>

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<u>직무관련범죄 고발처리 상황부</u>

일련	건명 및 범죄혐의 요지	피고발자			고발	고발장	수사개시	비고
번호		소속	직급 (직위)	성명	일시	접수기관	진행상황 등 공소제기 상정	(고발유예 사유 등)
			(1 1 1)					